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예산안 첨부서류에 지방세지출예산서 포함〉

■ 정성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947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 참고사항	2
IV . 검토의견	3
1. 예산안 첨부서류에 지방세지출예산서 포함 (안 제34조제10호의2 신설)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성호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5. 2. 6.

다. 회 부 일 : 2025. 2.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안 첨부서류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지출 예산서를 명시하고 있음.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실적과 추정금액을 포함한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에 지방세지출예산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34조제10호의2 신설).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예산안 첨부서류에 지방세지출예산서 포함(안 제34조제10호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예산안의 첨부서류 - (각 호 생략) <u><신 설></u>	○ 예산안의 첨부서류 - (각 호 생략)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1조의2에 따른 지방세지출예산서

개정안은 예산안 첨부서류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1조의2에 따른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동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에 제출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토대로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79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법안임.

2024년 당초 예산액 기준 지방세는 110.7조원으로, 국세(367.3조원)의 약 30% 수준으로 상당한 규모임. 특히 2024년의 경우 2011년(결산 기준 52.3조원)에 비해 지방세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이후로 매년 20%대를 유지하고 2024년 당초 예산 기준 23.2%에 해당하는 등 그 비중이 상당한 수준임.

특히 지방재정은 이러한 지방세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되는 지방 교부세나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을 주요 수입으로 하는데,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지방세 특례 지출의 규모는 지방재정수입의 규모를 감소시키고 중앙정부에의 재정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 특례 지출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적절한 관리·감독도 필요할 것임.

그러나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¹⁾에는 지자체장이 지방세 특례 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을 뿐,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 국회 차원에서 전체 지자체의 지방세 특례 지출 규모 실적 및 추정치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7946호)은 각 지자체장에게 지방의회에 제출한 지방세지출 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토대로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개정안은 이러한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첨부서류에 추가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국회 차원에서 지방세 특례지출 규모를 파악하게 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방세지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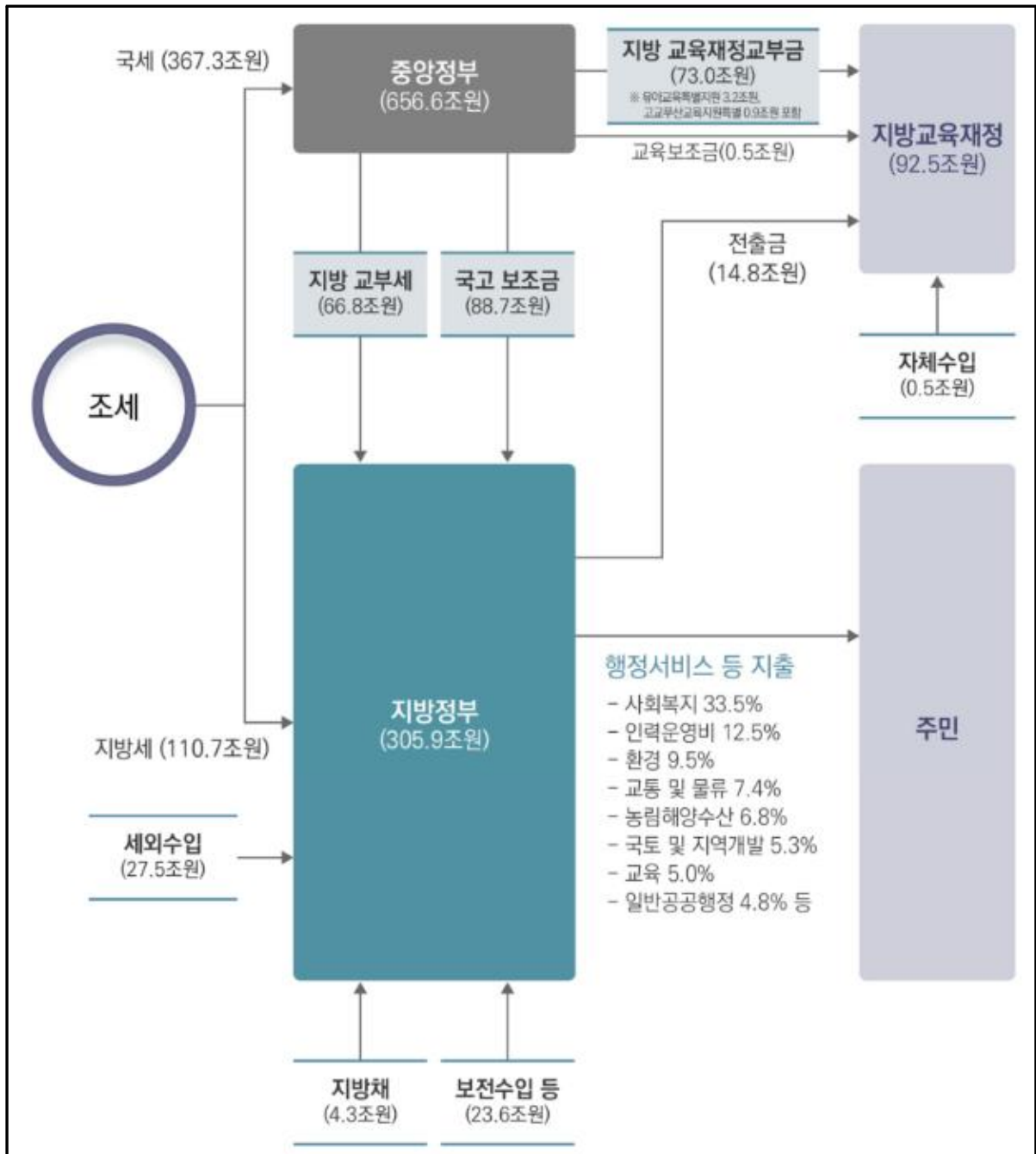
수 있고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도에 대한 관리를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지출보고서는 지자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로서 지자체 예산 심의권이 없는 국회에 정부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은 지방세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방교부세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을 주요 수입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회 차원에서 지방세 특례지출의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임.

실제 2024년 본(당초)예산 기준 지방재정 규모는 지방정부 305.9조원, 지방교육재정 92.5조원으로 총 398.4조원인데, 이 중 지방세(110.7조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27.8%이며 지방교부세(66.8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73.0조원), 국고보조금(88.7조원), 교육보조금(0.5조원)과 같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재정으로 교부되는 금액은 총 229조원으로 지방재정의 약 57.7%에 해당하는 상황임.

<지방재정 흐름(2024년 본예산 기준)>



자료: 「2024 대한민국 지방재정」, 국회예산정책처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지방세지출예산서의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 시기가 예산안 제출시기보다 늦으므로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되는 것은 시기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회에의 제출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현재 지자체장은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자체 결산 시와 예산 시 총 2번에 걸쳐 제출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자체장은 지방세 특례지출에 대한 실적이 적힌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²⁾에 따라 결산서와 같이 차년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있으며, 당해 연도 지방세 특례 규모 실적 및 해당 연도 추정치가 포함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³⁾에 따라 예산안과 함께 광역지자체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초지자체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지방세 특례 규모 실적 및 해당 연도 추정치가 포함된 지방세지출보고서는 지방의회에 11월 중에 제출되므로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시점인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에는 시기적으로 제출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지자체 예산안 심의 과정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 2)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0의2. 「지방세특례제한법」</u>
	<u>제181조의2에 따른 지방세지출예산서</u>
11. ~ 16. (생략)	11. ~ 16. (현행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157